

주간 행정 홍보

【2020. 9. 28. ~ 2020. 10. 4.】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2.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3.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4. 코로나19 버스 감축운영
5. 불법 방문판매업체 출입자제 및 신고 등 홍보
6.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중단
7. 추석연휴 입도객 대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8.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도민의견 수렴
9.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10. 제주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가입 안내
11.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자금 신청기간 연장
12.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 단속
13.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14.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15.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16. 동물보호법 시행개정에 따른 위해방지조치
17.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오 라 동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담당자 728-4816)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주세요!

-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개정 운영 안내



□ 세부운영계획

- 변경 운영 : 2020. 6. 29.(월)부터
-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2항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항

○ 주요 개정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대상 추가**
- 5대 중점 개선분야 신고 대상 기준 명확화



○ 신고대상[신고대상 상세 기준 뒷면 참조]

- (현행)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총 4대 중점 분야 및 인도(보도), 안전지대, 다리 위
- (추가) 어린이보호구역(명절 연휴 기간내 시민신고제 유예)



○ 신고방법 : 생활불편민원신고 앱(App)또는 안전신문고 앱(App) [행정안전부]

○ 앱[app] 다운로드 :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 스캔

	iOS	Android		iOS	Android
생활불편신고 앱(App)			안전신문고 앱(App)		

○ 신고시기 :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신고서류

· 칼라사진(정지 화상물) 2매 이상 첨부 (1분·5분 초과) ◆ 동영상은 제외

※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안전신문고 앱 사용하여 사진 촬영 시 촬영 일시 자동 표기됨)

○ 신고보상 : 없음 (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





신고대상 및 운영 시간

□ 운영(신고) 시간 및 사진 촬영 간격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08:00~20:00 1분이상 간격
 - 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 24시간, 1분이상 간격
 - 버스 정류소 : 06:00 ~ 24:00, 1분이상 간격
 - 안전지대, 다리(교량) 위 : 06:00 ~ 24:00, 5분이상 간격
- ※ 점심시간(11:30~13:30) 단속유예 적용 제외



□ 신고대상

○ 일반 지역

- ① **· 보도[인도]** :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인도)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②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③ **· 다리(교량)** : 주차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다리(교량)위 주차된 차량
- **5대 중점 개선 분야 -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대상 추가**
- ① **· 소화전**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공공소화전에 한함
가. 적색 복선 또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문구가 표시된 구간을 막거나 침범하여 주·정차한 경우
나. 주·정차 금지구역 내 황색 실선으로 노면 표시된 장소에 주·정차한 경우
× 사진 상 교통안전 표지 및 소화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② **· 교차로 모퉁이**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가.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황색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나. 주·정차 금지구역(도로모퉁이) 내 황색실선 노면표시된 장소에 주·정차한 경우
 - ③ **· 버스 정류소** : 버스가 진입하기 어렵도록 정류소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선 및 인근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사진 상 노면 표시선 및 버스 승강장 등이 명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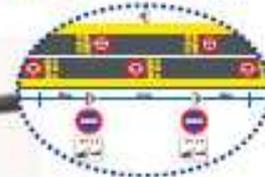
- ④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신고 대상 추가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 실선·복선 노면표시)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제보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 어린이보호구역은 방학기간 중에도 신고제 운영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함
- × 어린이보호구역 내일자리도 기존 7개 신고 대상 분야별 운영사항은 유효하며, 각 해당 신고 여건에 맞을 경우 과태료 부과
-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2배 적용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횡단 보도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규제 표지판/노면표시)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

□ **2020년도 3분기 및 9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담당자 728-4818)

- 접수기간 : 2020. 10. 5.(월)~ 10. 16.(금)
- 지원기간 : 2020년 3분기 및 9월
 - ※ 분기별 신청 원칙이나 2020.4.1.부터 코로나19 종식까지
매월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50인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주
- 지원내용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구분	경증		중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원금액	35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 지급일자 : 2020. 10. 30.(금) 지급 예정
- 구비서류
 - (9월 출력)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수 및 장애인근로자 고용 확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장애인을 확인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장애인근로자 임금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근로계약서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11월 개시) (담당자 728-4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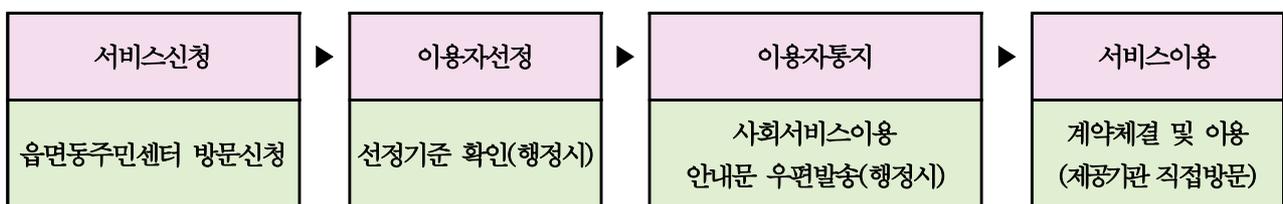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접수기간 : 2020.10.5.부터 ~ 2020.10.14까지

○ 신규 신청 가능 서비스 대상자 : 12개 서비스

대상	서비스명	선정인원	비고 (소득기준)
아동 · 청소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50명	소득140%이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200명	소득140%이하
	아동·청소년건강관리서비스	100명	소득기준없음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150명	소득140%이하
	출산 및 영유아용품렌탈서비스	100명	소득160%이하
가족	영유아가족지원예술서비스	100명	소득140%이하
장애인	장애아동음악재활지원서비스	20명	소득140%이하
성인	임산부토달케어서비스	20명	소득140%이하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	20명	소득140%이하
	성인심리지원서비스	100명	소득160%이하
	성인건강코칭서비스	50명	소득160%이하
노인	어르신기능향상서비스	200명	소득160%이하, 기초연금수급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코로나19 관련 버스 감축운행**

(담당자 728-4816)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광객 감소, 학교 부분 등교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빈차운행 방지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감축운행을 위해 운행시간표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감축내용 : 29개 노선 42대

나. 노선별 시행일

구 분		10월 5일 시행	
운행시간표		토·공휴일 운행시간표	임시 운행시간표
시 내 버 스	제주시	311(312)번, 320번, 351(352)번, 355(356, 357, 358)번, 415번, 477번	325(326)번
	서귀포시	510번	
급행·리무진			101번, 102번, 111(112)번, 121(122)번, 131(132)번, 181번, 182번, 600번, 800(800-1)번
관광지순환버스			810, 820번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가지마세요! 신고하세요!



가지마세요!



레크레이션, 음식물 제공, 효도관광 등을 통해 유인



사은품 및 경품증정을 미끼로 유인



저가 제품을 과대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곳



신고하세요!

-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 ▲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02-2058-0831)
- ▲ 직접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080-860-1202)
- ▲ 안전신문고 앱



불법 방문판매업체 및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체에 대해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경우, 신고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석 연휴기간 주민등록 민원 서비스 중단 안내
(담당자 728-4805)

○ 9.29(화) 20시부터 10.4.(일)24시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중단

추석 연휴기간 주민등록 민원 서비스 중단 안내



중단 일시 '20.09.29.(화) 20시 ~ '20.10.04.(일) 24시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정부24(주민등록업무) ·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가 중단 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유형	중단 (예정) 서비스
정부24 중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27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국문/영문) 주민등록 전입·정정 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철회)·재발급(취소) 신고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진위·내역확인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해외체류신고(철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 국외이주신고 본인서명발급·세대주 확인 전입신고 전자본인서명 발급·열람
무인민원발급기	모든 민원발급 서비스

**□ 추석 연휴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담당자 728-4818)**

- 처분기간 : 2020.09.26부터 ~ 2020.10.04까지
- 처분당사자 : 해당 기간 제주에 입도하는 도민 및 관광객
- 처분내용
 - 처분기간 내 제주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모든 도민 및 관광객 대상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도 방역당국이 지정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 즉시 방문
 - 추후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사항 위반으로 인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경제적·행정적·의료적 비용 구상권 청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금 부과 등 제재 조치
- 처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관광 및 방역 관련 부서
- 처분사유 : 추석 연휴 대규모 입도객이 예상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사전 방지
- 처분 위반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 가능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의4호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

(담당자 728-4813)

- 현재 제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방지, 지방재정부담완화 및 신속한 도시공원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오등봉·중부공원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내용 오등봉·중부공원 공원도입시설 제시 및 공원조성계획에 전반적인 의견

참구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TF팀 (064-710-4731~4732)
- 제주시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TF팀 (064-728-3251~3253)
- 우편접수: 제주시 광양9길 10 도시계획과

기간 2020. 9. 28.(월) ~ 2020. 10. 30.(금)

□ 2020년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담당자 728-4803)

○ 추석연휴 코로나19 방역에 최우선을 두면서 귀성·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2020. 9. 30.(수)~10. 4.(일) [5일간]
- 장 소 : 동 주민센터
- 근무시간 : 09:00 ~ 18:00 (야간은 시청 당직실로 전화착신)
- 근무방법 : 근무자 2명 이내(관내순찰 : 오전, 오후 1회 이상)

< 근무자 주요임무 >

-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즉시 동향보고
- 사무실 청사에 대한 자체 경계·경비 강화
- 각종 시민불편사항 접수 및 신속한 조치
-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안전 상황 예찰활동 전개

□ 제주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가입안내

(담당자 728-4813)

- 재난안전문자 송출서비스 가입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
 - * 본인의 휴대폰번호, 성명, 거주지역(읍면동)
 - 가입대상 : 제주 재난안전문자 받기를 원하는 자
 - 가입방법 : 인터넷, 방문
 - (인터넷)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이름, 지역선택 후 가입
 -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angjae.jeju.go.kr>
 - (방 문)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관련 부서에 수신 동의서 제출(별첨1~3)
 - 재난문자 서비스 재난분야(태풍, 호우, 감염병 등), 생활민원분야(정전, 단수 등)

□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담당자 728-4806)

- 국군의 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등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기념일과 국경일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 각종 경축·기념 행사에 도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함

○ 국기 게양 장소

- 관공서 및 공공기관,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 도로변 등

○ 국기 게양 시간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 국경일 등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10.1.(화), 10.3.(목), 10.9.(수) 07:00~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3.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음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

□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한 연장(담당자 728-4803)

○ (기 간) ‘20. 8. 24.(월) ~ ‘20. 10. 11.(일)

- 온 라 인 신청(행복드림포털): 8. 24.(월) ~ 10. 11.(일)
- 현장방문 신청(읍면동주민센터): 9. 7.(월) ~ 10. 8.(목), 공휴일 제외
- *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모두 5부제 해제 운영

※ 신청기간 연장(2주간 연장)

구분	당초	변경
온라인 신청	8. 24.(월) ~ 9. 27.(일)	8. 24.(월) ~ 10. 11.(일)
현장방문 신청	9. 7.(월) ~ 9. 25.(금)	9. 7.(월) ~ 10. 8.(목)

□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단속

(담당자 728-4812)

- ◆ 추석절('20. 9. 31 ~ 10. 4) 전후로 일부 감귤 유통인들이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여 강제착색 후 출하 우려
- ◆ 추석절 전후 본격적인 출하기 이전까지 미숙감귤 강제착색 등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소비자로부터 감귤 이미지 제고

□ 추진 방침

- 추석절 전후 기간 중 합동 유통지도 단속반 편성 운영
- 취약지역 집중 예찰활동 및 미숙과 유통 중점 단속
- 극조생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 추진에 따른 미숙과 유통 단속
- 2020년산 노지감귤 출하 초기부터 강력한 유통 단속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운영기간 : 2020. 9. 16. ~ 출하 종료시까지
- 운영기관 : 제주시 농정과(읍면동)
 - 10개반 44명(공무원 28명, 민간인 16명)
 - ※ 민간인 단속반 채용 및 운영 : '20. 9. 16. ~ 출하종료시까지
 - ※ 극조생 비상품감귤 특별단속기간 : '20. 9. 16. ~ 10. 10.

□ 행정 조치사항

- 추석절 전후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 계획 수립 추진
-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현수막 게첨 등 홍보 강화
- 마을별 홍보방송 강화
 - 극조생 감귤 주산지 마을 중심으로 앰프 등을 이용한 홍보 실시
- 감귤유통조례 위반자 적발 시 신속한 초동 조치 확행
 - 수확중인 미숙감귤(풋귤)은 즉시 수확중지 조치 및 폐기처분
 - 수확 후 강제착색행위 적발 시 즉시 수확 중단조치 및 폐기처분
- 특히, 극조생 감귤 주산지(조천읍, 애월읍)를 대상으로 덜 익은 감귤 수확 및 강제착색 출하금지 홍보 등 예찰활동 중점 강화

□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담당자 728-4818)**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낸 **숨은 영웅들**을 국가가 호명(呼名)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무공훈장을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56,000여 명의 영웅과 유가족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습니다.

I 기 간: 2019. 7. 24.~2022. 12. 31.

I 국민 참여 방법

- ▶ 군번을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조사단으로 전화하세요.(1661-7625)
 - ▶ 군번을 모르시면 먼저 가까운 행정 복지 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서서 병적을 확인하고 군번을 확인해 주세요.
- ※ 우리 동네 숨은 영웅 찾기에 적극 참여하세요.

I 무공 수훈자 혜택: 영예 수당 지급, 보훈 병원 진료, 국립묘지 안장 등

I 상담 문의: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042-550-7382, 7399)



호국 영웅과 그 가족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대한민국육군
Republic of Korea Army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담당자 728-4812)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하고 절세혜택도 누리세요!

농지은행

영농 규모화·농지 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농지를 확보(매입·임차)하여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제공(매도·임대)하는 농지관리기구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요?

- 상속, 증여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
- 농지를 임대하고 싶으나 임차자를 직접 구하기 힘든 분
- 고령·질병 등으로 영농을 은퇴하고 자 하는 분 등



무엇을
말기나요?

농지(1000㎡ 이하 소규모 농지도 수탁가능)
* 주말·체험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제외

말기면 왜
좋을까요?

안정적 임대소득 보장
(임차료는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소유자-경작자 협의 결정)
8년 이상 위탁시 양도소득 중과세 10% 감면
(일반과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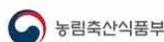


어떻게
말기나요?

전국 한국농어촌공사 93개지사
방문신청 또는 상담전화
1577-7770
농지은행 홈페이지
(www.fb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얼마나
말기나요?

위탁기간은 5년이상
(계약종료 후 재위탁 가능)



□ 동물보호법 시행개정에 따른 위해방지조치 (담당자 728-4812)

- 근거 :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시정명령)

「동물 또는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의 내용으로 동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1차 : 30만원, 2차 : 50만원, 3차 : 100만원)

- 대상동물 : 견주가 확인이 되나 목줄 등 안전조치가 되지 아니한 동물
- ※ 단, 동반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은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라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부과 대상

※ 참고사항

- 견주가 불분명하거나 유기동물의 경우 → 유기동물 구조반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에서 범칙금 5만원 부과 가능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담당자 728-4814)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환·연령 특성상 28일 이내 진단이 어렵거나 6개월 이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현행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무리한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 등을 예방하고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사업개요 :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에게 의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개정 시행내용

- 진단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

현 행	개 선 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

- 시행일 : 2020. 9. 1.

- 개정지침 적용 : 시행일('20. 9. 1.) 이후 출생 환아부터 적용

※ '20. 8. 31. 이전 출생 환아는 기존 지침 내용 적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담당자 728-4807)

○ 시행개요

· 기 간 : 2020. 8. 5. ~ 2022. 8. 4.(2년)

※ 확인서 발급 및 소유권 등기는 2023. 2. 4.까지

· 적용대상 범위 : 1995. 6. 30.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적용대상 부동산 : (읍·면지역) 모든 토지 및 건물

※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농지 및 임야)의 경우 법률 개정 후 적용 가능

○ 타법률과의 관계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 적용

-농업인 및 농업법인 외에는 농지취득 불가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장기미등기 과징금 : 적용

-특별조치법은 1995. 6. 30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청 토지 대부분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적용

-중간생략등기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 전매자 등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고 벌칙의 경우 공소시효 경과로 형사처벌 불가

· 토지거래 허가 및 실거래 신고(계약서 검인) : 배제

-토지거래허가구역(제2첨단과학기술단지-월평영평동)지정(2015.12.20.)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거래는 허가대상에 아님

- 특별조치법은 대장소관청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해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어 실거래 신고나 검인 등의 절차는 필요치 않음

· 토지분할 허가 : 적용

-토지분할 허가대상 토지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신청 가능

별첨

보증서 발급 절차

순번	항 목	주요내용
1	신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지정보증인에게 신청 - 입증자료 :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미등기인 경우에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농지에 한함), 소유권 증명자료 등 ▶ 지정보증인 명단은 종합민원실, 읍·면·동, 마을회관 등에서 확인
2	접수 (지정보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서 발급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 ▶ 마을보증인이 지정보증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입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3	적용대상 확인 (자격보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여부 확인 및 입증자료 검토 ▶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즉시 반려하고 입증자료 미비시 제출요구 ▶ 장기미등기 과징금 또는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산정(면적 × 공시지가)하여 안내
4	보수 약정 (자격보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과 보증에 대한 보수를 협의하고 약정서 등 작성 - 보수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되, 25%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 ▶ 보수액 뿐 아니라 보증이 중단될 경우 지급액에 대해서도 협의 필요
5	보증일정 통보 (자격보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된 건수에 따라 보증일정 탄력 운영(월 1회 등) ▶ 보증장소는 시청(종합민원실), 읍·면·동, 마을회관 등으로 지정 ▶ 신청인, 마을보증인, 업무담당자에게 보증일정 통보 및 입회요청 - 마을보증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참석 보증인 선정(행정 동리 반영)
6	보증심사 (보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보증인이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을 직접 대면하여 보증심사 -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 요구 - 입증자료 제출에 시일이 걸릴 경우 보증일정을 다시 잡아 진행 ▶ 자격보증인은 마을보증인에게 사실관계 등 의견을 물을 수 있음. ▶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청(종합민원실)에 토지이동 가능여부 확인 후 보증심사 - 신청인에게 지적부서 방문여부 및 현황측량성과도 등 확인 ▶ 시청(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입회하여 참석자 명단에 서명토록 안내
7	보증서 작성 (자격보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서는 보증심사 완료 후 자격보증인이 직접 작성 - 단, 마을보증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증서 작성 불가 ▶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보증서에 토지이동으로 지목 또는 면적이 변경된다는 내용 기재 ▶ 보증서 작성 후 자격보증인과 마을보증인이 보증서에 인감 날인
8	보증서 발급 (지정보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 날인 후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보증서와 보증서 발급대장에 계인 날인 ▶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대장에 사유기재 ▶ 보증서 발급대장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작성·비치 ▶ 자격보증인을 지정보증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자격보증인이 발급절차 수행